

## 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## #. 타 업체의 급유장비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

질 의 요 지	회 신 내 용
('06. 1. 5, ○○급유)	('07. 1. 5, 항만운영과)
○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급유업자가 동일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	<ul> <li>○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급유업자가 동일한 경우 급유서비스를 받는 항만이용자에게 원활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업종을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</li> <li>- 단, 이 경우 선박급유용 장비로 등록되어 있 는 선박은 선박급유 목적의 내항화물운송만 가능함</li> </ul>
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에는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 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 며, 여기서의 실적은 등록장비의 실적인지 아 니면 업체의 실적인지 명확한 구분과 등록장 비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	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5에 기술된 사업실 적이라 함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 수행 주체(사업자)의 실적을 의미하며, 등록된 장비 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은 아님
○ 등록장비 외 선박으로 급유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, 타 업체의 급유장비 및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 선박으로 급유행위가 가능	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의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등록 장비 외 다른 장비로 사업이 가능하며, 타업체의 급유장비 등 사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